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46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김종양 · 김성원 · 서천호
이달희 · 박덕흠 · 배준영
김태호 · 조은희 · 박충권
이성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국내선 운송지연은 수만 건을 넘어서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1시간 미만의 단시간 지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승객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송지연에 대한 피해구제의 기준이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존부(存否)와 그 책임한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배상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항공여객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1시간 이상의 운송지연에 관한 것에 그쳐, 빈번하게 발생하는 1시간 미만의 운송지연은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1시간 미만인 국내선 운송지연도 일정기간 동일 항공사의 동

일 노선에서 상습적으로 지연이 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내항공노
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
61조의3 신설 등).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 등) ① 제6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고, 제61조제8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송 불이행(체재필요 시 적정 숙박비 등의 경비를 포함한다)

가.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1) 1시간 이후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보상

2)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시: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보상

나. 대체편이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2. 운송 지연

가. 1시간 미만 운송 지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상습 지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의 범위에서 지연의 반복성·상습성, 지연 원인, 항공운송사업자의 귀책 여부 및 해당 노선의 지연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

나.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운송 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보상

다.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 운송 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보상

라. 3시간 이상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보상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마일리지 또는 이에 준하는 모바일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연의 반복성·상습성 판단기준, 지연을 산정방법, 보상금액, 보상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제2항제6호 중 “마일리지(탑승거리, 판매가 등에 따라 적립되는 점수 등을 말한다)에”를 “마일리지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항공노선의 운송 지연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1조의3(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 등) ①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고, 제61조제8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운송 불이행(체재필요 시 적정 숙박비 등의 경비를 포함한다)</u> <u>가.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u> <u>1) 1시간 이후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보상</u> <u>2)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시: 불이행된 해당구</u>

간 운임의 30% 보상

나. 대체편이 제공되지 아니
한 경우: 불이행된 해당구
간 운임환급 및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2. 운송 지연

가. 1시간 미만 운송 지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상습 지연 기준을 충족하
는 경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의 범위에서
지연의 반복성·상습성,
지연 원인, 항공운송사업
자의 귀책 여부 및 해당
노선의 지연율 등을 고려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금액을 보상

나.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운송 지연: 지연된 해당구
간 운임의 10% 보상

다.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
운송 지연: 지연된 해당구
간 운임의 20% 보상

라. 3시간 이상 운송지연: 지
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
0% 보상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① (생략)

②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 5. (생략)

6.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권 구
입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
(탑승거리, 판매가 등에 따라
적립되는 점수 등을 말한다)
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외국
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
상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
하고, 마일리지 또는 이에 준하
는 모바일 이용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구
체적인 기준 및 지급방법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
연의 반복성·상습성 판단기준,
지연율 산정방법, 보상금액, 보
상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
-----마일리지
에-----

함한다)별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